

# 연금저축계좌 핵심(요약)설명서

소비자보호검토편 제26-0437호 (심의일 : 2026.04.02)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연금저축계좌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연금저축계좌 거래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 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 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연금저축은 **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**해야 **세제혜택**을 받을 수 있는 **장기 투자상품**이며 **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**

◇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납입기간에는 **세액공제**를, ②연금수령 시에는 **연금소득세**(5.5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적용<sup>1)</sup>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. (☞ 다만 연금수령이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임)

1)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: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수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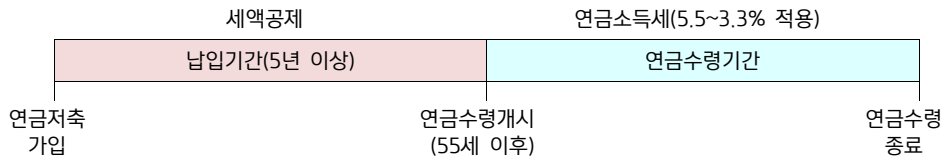
• **세액공제**: 연 **납입액 중 600만원** 한도에서 13.2%<sup>1)</sup> 또는 16.5%<sup>2)</sup> **세액공제를 적용**

- 1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초과인 경우
- 2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인 경우

• **연금수령 요건**(연금소득세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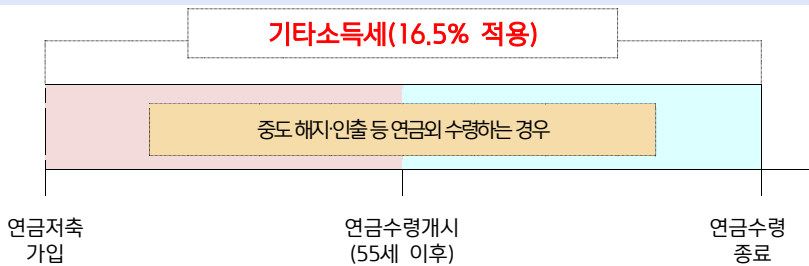
- 1) 가입 후 **5년 경과**하고 **55세 이후 연금수령**을 개시
- 2) 매년 **연금수령한도 이내**에서 **인출**할 것

연금수령 한도=연금계좌의 평가액 ÷ (11-연금수령연차) × 12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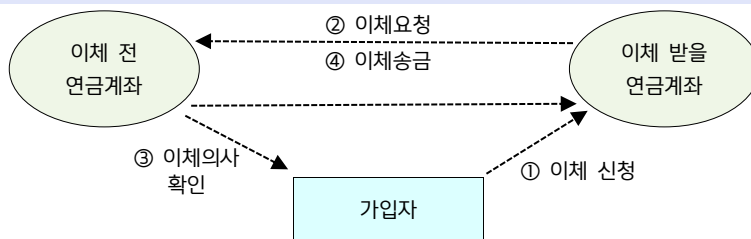


◇ **중도 해지**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(“**연금외 수령**”)의 경우 **기타소득세(16.5%** 지방세 포함)가 부과<sup>1)</sup>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(5.5~3.3%)보다 **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1) 기타소득세 적용대상 :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+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



◇ **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가 가능**하며, **연금저축 이체 시**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**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.** 단,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됩니다.



- ◆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[www.kiwoom.com](http://www.kiwoom.com)) 또는 고객센터(1544-9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연금저축계좌
- 상품특징 :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

### 2.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구분	증권사	은행	생명보험	손해보험
상품	연금저축계좌	연금저축신탁	연금저축보험	연금저축보험
납입방식	자유납	자유납	정기납	정기납
연금형태	확정	확정	종신, 확정	확정 (~25년)
예금자보호법	<b>적용되지 않음</b>	적용	적용	적용

### 3. 발생 가능한 불이익

구분	내용
중도해지	-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등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(5.5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과세제외	-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만큼 소득·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득·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('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 공제확인서' 제출) 하지 않을 경우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
### 4. 민원·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속지가 필요한 사항

- Q1. 투자원금 보장이 가능한가요 ?
  - 연금저축계좌는 **투자원금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.** 따라서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 손실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.
- Q2.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. (예시. 일반납입 500만원, 만기ISA전환금 7,000만원)
  - 일반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: 600만원 (만기ISA전환금액도 일반납입액으로 간주하여 최대 세액공제한도로 적용)
  - 만기ISA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: 300만원 (전환금액의 10%이나 최대 300만원 한도)
  - > **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: 900만원** (600만원 + 300만원)

### 5. 연금저축계좌 가입 및 납입

구분	내용
계좌 종류	- 연금저축펀드 :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
가입 대상	- 제한 없음
납입 한도	- <b>연간 1,800만원<sup>1)</sup> + ISA 만기계좌의 전환 금액<sup>2)</sup> + 주택차액<sup>3)</sup> + 부동산차액<sup>4)</sup>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쉐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, 연금저축계좌 합산</li> <li>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<b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</b>(이하 ISA)의 <b>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</b>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</li> <li>3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고령 가입자가 주택거래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</li> <li>4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(주택차액과 합산 생애 누적 1억원 한도)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(참고)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</p> <p>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</p> <p>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</p> </div>

세액공제	- 연간 600만원(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) + ISA 전환금액의 10%(300만원 한도)		
	총 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	세액 공제율
	5,500만원이하 (4,500만원)	600만원	16.5%
5,500만원초과 (4,500만원)	13.2%		

## 6. 연금저축계좌 운용 및 이체

구분	내용								
운용방법	- 연금저축계좌 : 계좌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- 연금저축전문펀드(종류형 펀드의 연금저축계좌 전용클래스 포함) 및 ETF(인버스·레버리지는 금지), 리츠,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편입가능								
위험등급	- 연금저축계좌 내 개별거래상품의 위험등급에 따라 본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, 가입 전 개별거래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반드시 확인해야함								
유동성위험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중도해지 불가</td> <td>중도해지 시 비용 발생</td> <td>중도해지 가능</td> </tr> <tr> <td>해당여부</td> <td></td> <td>V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*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* 연금저축계좌 내 개별거래상품의 유동성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함</p>	구분	중도해지 불가	중도해지 시 비용 발생	중도해지 가능	해당여부		V	
구분	중도해지 불가	중도해지 시 비용 발생	중도해지 가능						
해당여부		V							
보수/수수료	개별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를 참고								
계좌이체	-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<b>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</b> - 서로 다른 종류(신탁, 펀드, 보험)간의 이체도 가능하며,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(단,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가 제한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">           ① 연금계좌('01.1월 이후 개설)에서 타 연금저축계좌('13.3월 이후 개설)로의 전액이체            ② 연령이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퇴직 연금계좌(이하 개인형IRP)로 전액이체            ③ 연령이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           ④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의 전액이체         </div>								
계좌승계	-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<b>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</b> -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-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(상속인)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								

## 7. 연금 수령 및 인출

구분	내용
연금수령	<p>① <b>연금수령 요건 : 55세 이후 및 가입기간 5년 경과</b> *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요건 미적용 -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, 수령주기,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<b>연금수령 개시를 신청</b>하여야 <b>수령 가능</b> -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,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, 금액, 환매순서 등을 지정</p> <p>② <b>연금수령한도 : 연금수령이란 연금수령한도 내의 수령</b>을 의미하며, <b>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'연금외수령'</b>에 해당</p> 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^1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^2)} \times \frac{120}{100}$ <p>1) 연금저축 신탁펀드 : 기준가x누적좌수 2)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,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</p>

- ① **일반적인 경우** :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**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**하나
  - ☞ **연금외수령에 해당**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
- ② **부득이한 사유의 경우** :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
  - ☞ **연금수령으로 간주**
  - 신청시기 및 사유 :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
  -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

중도인출

부득이한 사유	인출한도
천재지변	X
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	X
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	O <sup>1)</sup>
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	O <sup>1)</sup>
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	X
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	X

1)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 
 (ㄱ)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
 (ㄴ)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(1개월미만은 1개월로 간주)×150만원  
 (ㄷ) 200만원

8. 적용세제

- 적립만기 전 또는 연금수령 전에 해지할 경우 [신탁이익 + 소득(세액)공제 받은 금액]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가 분리과세 됩니다. 다만, 당해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금부담 없이 출금 가능합니다.
- 중도해지시 "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"를 제출하면 과다 원천징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해지시 위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적립금(평가금액)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율(16.5%)로 원천징수 할 수 있으며, 세액공제(소득공제)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계좌해지 전에 "과세제외금액"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향후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를 지참하여 금융회사에 과다 원천징수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계좌의 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용										
자금인출순서	<p>①과세제외금액 → ②이연퇴직소득 → ③과세대상소득(세액공제 금액+운용소득)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</p> <p>※ (참고)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(ISA 전환금액 제외)</li> <li>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된 금액</li> <li>③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(600만원)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</li> <li>④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('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'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)</li> </ul>										
연금수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</li> <li>② <b>이연퇴직소득</b> : <b>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</b>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 * 단,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및 20년 이하 시 60%, 20년 초과 시 50%</li> <li>③ <b>과세대상소득</b> : <b>연금소득세(3.3%~5.5%)</b>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나이</th> <th>확정형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(연금수령일 현재)</td> <td>70세 미만</td> <td>5.5%</td> </tr> <tr> <td>80세 미만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80세 이상</td> <td>3.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1500만원 초과 시, <b>종합소득세율(6.6~49.5%)</b> 또는 <b>단일세율(16.5%)</b> 적용하여 <b>종합과세</b></p>	구분	나이	확정형연금	(연금수령일 현재)	70세 미만	5.5%	80세 미만	4.4%	80세 이상	3.3%
구분	나이	확정형연금									
(연금수령일 현재)	70세 미만	5.5%									
	80세 미만	4.4%									
	80세 이상	3.3%									
연금외수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</li> <li>② <b>이연퇴직소득</b> : <b>퇴직소득세 100%</b> 부과</li> <li>③ <b>과세대상소득</b> : <b>기타소득세 16.5%</b> 적용</li> </ul>										

■ 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

	연금계좌		연금수령	연금의수령
과세제외 금액	당해연도 납입금액 ①	⇒	과세제외	과세제외
	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②			
	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③			
	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④			
이연퇴직 소득	이연퇴직소득 ⑤	⇒	퇴직소득세의 60~70%	퇴직소득세
과세대상 소득	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⑥	⇒	연금소득세 (5.5~3.3%)	기타소득세 (16.5%)
	연금계좌의 운용소득⑦			

☞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임

9. 가입자 유의사항

-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개별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연금저축펀드계좌는 **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** 단,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-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키움증권([www.kiwoom.com](http://www.kiwoom.com)), 금융투자협회([www.kofia.or.kr](http://www.kofia.or.kr)), 금융감독원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, 통합연금포털(<https://100lifepan.fss.or.kr>) '연금저축 통합공시'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0. 고객 권익보호 사항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해지권	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 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'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' 또는 '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'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,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.
청약철회권	- 투자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, 청약이 철회된 경우,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,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.
자료열람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제출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- 회사는 법령,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